

베네수엘라의 자원법제에 관한 연구

- 가스법제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변호사

정 경 호¹⁾

초 록

베네수엘라는 확인 석유매장량 1위, 확인 천연가스 매장량 8위를 자랑하는 자원부국이다.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원국유화 정책과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원개발법제는 가스 및 원유 관련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이원적 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원유 관련 사업은 탄화수소법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은 국영석유기업인 PDVSA와의 합작기업 형태로만 원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며 생산된 원유는 모두 PDVSA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합작기업의 지분 중 최소 60% 이상은 PDVSA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작조건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요구사항이므로 사실상 국가 주도에 의해서만 원유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

반면 가스개발사업은 주로 탄화수소가스법의 적용을 받는데, 석유광물부의 License 또는 Permit을 얻기만 하면 국영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유개발사업에 비해 폭넓게 인정된다. 탄화수소가스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수반가스의 탐사 및 생산, 그리고 수반가스이든 비수반가스이든지 불문하고 중류 및 하류부문, 즉 초기저장, 처리, 분배 등이 탄화수소가스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이들 사업영역에 있어서는 민간기업도 License 또는 Permit을 얻어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에 의한 사업수행만을 강조하는 원유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베네수엘라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향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므로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베네수엘라 법

1) 이하의 논의는 필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원의 판결보다는 국제중재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중재는 크게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통한 상사 중재와 조약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한 국제중재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응하는 경우에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베네수엘라에서 집행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재조항합의에 소극적이거나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약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을 먼저 염두에 두고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약상 투자분쟁해결조항은 크게 양자간 조약에 규정된 경우와 워싱턴 협약(이른바 ICSID 협약) 등 다자간 조약에 규정된 경우로 나뉘는데 베네수엘라는 다자간 조약인 워싱턴 협약에서 최근 탈퇴하였으므로 워싱턴 조약에 근거하여서는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은 양자간 조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 자회사 형태로 먼저 진출한 다음 그 자회사로 하여금 베네수엘라로 진출하게 하는 접근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베네수엘라의 가스개발사업 참여시 우선 해상의 비수반가스전을 중심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구도에 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PDVSA와 사이에는 합작계약을, 베네수엘라 정부와 사이에는 광권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바 합작계약에서는 PDVSA에 수익지분 외에 과도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광권계약에서는 가혹한 조건이 부가되어 그 미준수가 License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기업에 불리한 베네수엘라 법원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두 계약에 모두 중재합의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스의 생산, 운송, 판매, 수출, 정제시마다 별도의 License나 Permit 이 필요하며 발급시 석유광물부는 다양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과중한 조건이 부담이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인허가의 적기 취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내 가스 판매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등의 이익실현저해요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 사전에 수익모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베네수엘라, 가스, 오일, 원유, 탄화수소, 차베스, 자원, License, Permit, 로열티, PDVSA, 중재, 워싱턴 협약, ICSIS 협약〉

I. 들어가며

기관에 따라 순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BP에 따르면²⁾ 201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확인 석유매장량 (Proved Reserves)은 298,300백만 배럴로 단일국가로서는 세계1위이고,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 또한 197.1Tcf로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베네수엘라는 자원개발업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차베스 정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자원국유화 경향과 그로 인한 대미관계 악화,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난, 치안불안 등으로 현재 외국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불안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추후 사업기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의 자원개발 법제를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차베스 정권하에서 베네수엘라의 자원개발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경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연혁적인 의미를 먼저 짚어본 후, 베네수엘라의 원유개발법제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주로 가스개발법제에 초점을 맞추어 베네수엘라의 자원개발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 후 가스개발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전략과 구도에 대해 소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II. 베네수엘라 자원개발법제의 급변 배경

1.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과 친사회주의 정책

베네수엘라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Hugo Rafael Chávez Frías)는 “21세기 사회주의 (Socialismo del siglo XXI)” 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1998.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후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자신의 개혁이 반대에 부딪히자 국민투표로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1999. 12월에 신헌법(이하 “신헌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신헌법에 따라 2000. 7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또다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 후 2006. 12월과 2012. 12월에 각각 치러진 대선에서도 또다시 승리함으로써 4선 연임에까지 성공하였으나 재임 중인 2013. 3. 5. 암으로 사망하였다.

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2015. 10. 10. 방문> (<http://www.bp.com/content/dam/bp/pdf/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2015/bp-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2015-full-report.pdf>)

재임기간 중 차베스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신자유주의 반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반대 등을 강력히 표방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2006. 3. 31. 석유를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 및 베네수엘라의 자원과 관련해서 국내외 기업이 맺은 모든 계약의 무효화를 공식 선언하였고 이날(2006. 3. 31.)을 “베네수엘라의 역사적인 날”(Este es un dia historico en Veneauela)이라고까지 칭하였다.

비록 차베스는 사망하였지만, 그의 사후 “차베스의 (정치적) 아들”임을 자임하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Moros) 대통령권한대행이 2013. 4. 14.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차베스가 표방했던 친사회주의 및 자원보호주의라는 정책적 기조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 신헌법의 제정

1999년에 제정된 베네수엘라의 신헌법 제12조³⁾는, “베네수엘라의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위치한 광물 및 탄화수소(hydrocarbons)는 모두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소유이며 공공의 자산이므로 양도불가능한 절대적인 자산이다”라고 선언⁴⁾하고 있다. 사실 법률로써 자국내 지하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므로 신헌법 제12조를 극히 이례적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 정도가 예외일 뿐, 법률로 지하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한 국가들이 오히려 대다수이다⁵⁾.

다만 신헌법 제12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자원을 나열하면서 “탄화수소(hydrocarbons)”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원유⁶⁾이든 가스⁷⁾이든, 경질유이든 중질유이든, 심지어 아스팔트이든 관계없이 그 자원이 탄화수소화합물이기만 하면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3) <http://venezuela.justia.com/federales/constitucion-de-la-republica-bolivariana-de-venezuela/titulo-ii/capitulo-i/#articulo-12> 참조

4) 베네수엘라가 신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탄화수소를 포함한 지하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흔히 “국유화법”이라 통칭되는 *Ley orgánica que reserva al estado la industria y comercio de los hidrocarburos*(Organic Law Reserving Hydrocarbon Industry and Commerce to the State)에 의해 1976. 1. 1.부터 이미 베네수엘라의 지하자원은 국유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Uisdean R. Vass 외 1인, *the New Venezuelan Legal Regime for Natrual Gas: a Hopeful New Beginning?*, 2001,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제103면 참조

5) John S. Lowe, *Oil and Gas Law*, West, Fifth edition. 제8면.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광권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주정부가 수천만 에이커의 광권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하자원의 사적 소유가 기본원칙이라고 한다.

6) 이하 본 글에서는 흔히 Crude Oil로 통칭되는 액상 탄화수소화합물(Liquid Hydrocarbons)을 “원유”라 칭한다.

7) 이하 본 글에서는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화합물(Gaseous Hydrocarbons)를 “원유”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가스”라 칭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헌법의 다른 일부 조항에서는 필요에 따라 탄화수소 중에서도 원유에 대한 사항과 가스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원유와 가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신헌법 제302조⁸⁾는 국익을 위해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즉 국가에 유보되어 있는) 사업분야를 나열하면서 “석유사업(petroleum activity)”을 언급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문례상 석유(petroleum)라 함은 가스와는 구분되는 액상 형태의 탄화수소 화합물, 즉 원유를 말하므로⁹⁾ 반대해석상 가스사업은(최소한 헌법상으로는) 국가에 유보(reserve)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의 탐사 및 생산, 수반가스인지 비수반가스인지를 불문하고 가스의 저장, 처리, 배분사업은 민간기업도 License나 Permit을 얻기만 하면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신헌법에서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나열하면서 가스산업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신헌법은 제303조¹⁰⁾에서 “정치·경제적 자주권과 국가전략을 위해, 국가는 Petroleos de Venezuela, S.A.¹¹⁾ 및 오일(oil)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단, PDVSA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설립된 자회사, 전략적 제휴관계, 회사, 기타 주체는 제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스산업과 구분하여 오일산업을 별도로 지칭하는 한편, 오일산업은 국가가 모든 지분을 가진 법인을 통해서만 수행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신헌법은 석유 혹은 오일과 구분하여 “가스”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헌법 제156조¹²⁾가 국가의 소관사항을 나열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 특히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제178조¹³⁾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규정하면서 “가정용 가스(의 공급)”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신헌법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8) <http://venezuela.justia.com/federales/constitucion-de-la-republica-bolivariana-de-venezuela/titulo-vi/capitulo-i/#articulo-302>
- 9) Uisdean R. Vass 외 1인, 제106면.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petroleum이 탄화수소가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영어 및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복수의 외국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통상의 문례상 petroleum은 액상의 탄화수소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고, 위 Uisdean R. Vass 외 1인의 논문도 그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므로 본 글에서는 petroleum activity는 액상의 탄화수소를 다루는 산업, 즉 원유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10) <http://venezuela.justia.com/federales/constitucion-de-la-republica-bolivariana-de-venezuela/titulo-vi/capitulo-i/#articulo-303>
- 11)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기업이다. “국유화법”에 따라 1976. 1. 1. 베네수엘라의 자원이 국유화됨에 따라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하 “PDVSA”라 한다.
- 12) <http://venezuela.justia.com/federales/constitucion-de-la-republica-bolivariana-de-venezuela/titulo-iv/capitulo-ii/#articulo-156>
- 13) <http://venezuela.justia.com/federales/constitucion-de-la-republica-bolivariana-de-venezuela/titulo-iv/capitulo-iv/#articulo-178>

첫째, 신헌법은 종전에 법률 단계에 머물고 있던 “탄화수소”의 국유원칙을 헌법 단계로 격상시켜 다시 규정함으로써 친사회주의적인 성향, 자원보호주의 경향 및 석유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자원정책이 재국유화(renationalization) 혹은 진정한 국유화(true nationalization)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에서도 엇볼 수 있는데¹⁴⁾, 베네수엘라가 정부 주도로 자원개발산업을 수행하면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할 계획임을 보여준다.

둘째, “탄화수소”, “원유”, “가스”라는 용어를 필요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원유와 가스에 대해 각기 다른 규율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위 두 번째 시사점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원유사업의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석유산업(petroleum activity)을 국가만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점, PDVSA를 비롯하여 오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의 지분은 모두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가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독점권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간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3. 법령의 제정

1999. 4. 26.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제·금융문제에 관한 특별조치 권한의 대통령 부여에 관한 법률 [*Ley orgánica que autoriza a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para dictar medidas extraordinarias en materia económica y financiera requeridas por el interés público*](Organic Law Authorizing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o Dictate Extraordinary Measures in Economic and Financial Matters Required for the Public Interest)]가 발효되었다. 위 법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대로 대통령에게 경제와 금융문제에 관한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치에는 가스 산업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이 포함된다[경제·금융문제에 관한 특별조치 권한의 대통령 부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항 (i)]. 특히 위 법은 수권법¹⁵⁾(Enabling Law)이기 때문에 위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Latin America Oil & Gas Handbook, 2012, Baker & McKenzie 제106면

15)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말한다.

대통령은 1999. 9. 12. 위 법에 근거하여 가스사업을 규율하는 대통령령 제310호를 제정하였는데, 이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1999. 9. 23. 탄화수소가스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Organic Gaseous Hydrocarbons Law (Official Gazette No. 36793 September 23, 1999)](이하 “탄화수소가스법”)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2006. 5월 한차례 개정된다.

한편 이상의 법령과는 별개로 차베스 대통령은 2000. 11. 13. “위임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권 부여에 관한 법률”[*Ley que Autoriza al Presidentes de la República para dictar Decretos con Fuerza de Ley en las Materias que se Delegan*(Law Authorizing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o Issue decrees with the force of law in delegated matters) 제2조 제1항 e, f, g, h에 근거하여 원유사업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1510호를 제정하였는데, 이 대통령령 또한 수권법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2001. 11. 13. 탄화수소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Hydrocarbons Organic Law)](이하 “탄화수소법”)으로 승격되었다.

정리하면, 탄화수소자원의 두 개의 큰 축인 원유와 가스개발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두 가지 법률(탄화수소법과 탄화수소가스법)은 모두 자원보호주의를 표방한 차베스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기반해 제정된 것이며 그 당연한 귀결로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 강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들 법률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원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대대적인 세무조사, 탈세와 노동착취 등에 대한 고발로써 석유사업자들을 압박¹⁶⁾한 끝에 2005. 12. 31.까지 19개 다국적 기업과 사이에 체결한 32개 석유운영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사업 형태를 모두 탄화수소법에 따라 설립되는 혼합회사(즉 PDVSA와 함께 설립한 합작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계약(transi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¹⁷⁾, 그에 대한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차베스 대통령은 2006. 3. 31. 기존에 체결한 모든 자원개발계약의 무효화와 자원의 국유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6) 정경원 외 3인, 제60면

17) <http://www.pdvs.com/interface.en/database/fichero/publicacion/1101/35.PDF>

III. 베네수엘라 자원개발법제의 개요

1. 이원적 체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탄화수소의 국가 소유를 선언한 신헌법 아래에서 베네수엘라는 원유와 가스에 대해 이원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원유 및 수반가스¹⁸⁾(associated gas)에 대해서는 탄화수소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비수반가스¹⁹⁾(non-associated gas)에 대해서는 탄화수소가스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위 두 가지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투자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원적 체계를 구성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원유생산에 가해지는 각종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비수반가스 생산량을 베네수엘라 독자적으로 조절하기 위함이다.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이므로 국내법 및 OPE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유생산량을 조절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원유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탄화수소법의 적용범위에서 비수반가스가 빠지게 되는 결과, 베네수엘라는 원유생산량에 가해지는 제약에 관계없이 비수반가스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법률체계상 특이점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헌법-법률(leyes)-대통령령(decretos)-부령(reglamentos)의 순으로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법률체계와의 차이점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우선하는 특별한 법률 혹은 특별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²⁰⁾.

상술하면, 법률 중에서도 최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조직법(organic laws, leyes orgánicas)이 있다. 조직법은 공권력의 조직구성, 헌법상 권리의 구현, 다른 법률의 규범적 근거가 되는 법률들 혹은 헌법에

18) 원유생산시 유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19) 원유를 수반하지 않고 가스만 생산되는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말한다.

20) 정경원 외 3인, 제51면

서 조직법으로 이미 규정한 법률들을 말하는데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²¹⁾. 따라서 조직법은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지만 일반법(ordinary laws, leyes ordinarias)이나 대통령령보다는 우위에 있다. 같은 조직법끼리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새로운 조직법이 과거의 조직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조직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²²⁾.

또한 수권법(enabling laws, leyes habilitantes)에 속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이는 국회가 대통령(행정부)에게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법률²³⁾을 말한다. 이 수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수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일반 시행령(decreto)와 구분하여 delegated laws, “DEF(decreto con fuerza de ley)”라 한다]이 제정되면 이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수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는데 수권법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²⁴⁾.

IV. 원유개발법제

1. 개요

원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은 탄화수소법이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탄화수소법은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탄화수소(Hydrocarbons)의 탐사, 개발, 정제, 수송, 저장, 상업화, 저장, 보존,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정제상품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한다(탄화수소법 제1조). 다만 탄화수소 중에서 가스과 관련한 사업활동[수반가스(associated gas)의 생산은 제외]은 후술하는 탄화수소가스법의 규율을 받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탄화수소법 제2조).

정리하면, (i)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의 추출활동(즉 생산)과 (ii) 수반가스이든 비수반가스이든 관계없이 가스와 관련한 나머지 사업(생산은 제외), 예컨대, 처리, 저장, 판매, 정제 등의 사업은 탄화수소가스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모든 탄화수소 관련 사업은 탄화수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1) 정경원 외 3인, 제51면

22) Uisdean R. Vass외 1인, 제112면

23) 베네수엘라 헌법 제236조 제8항

24) 정경원외 3인, 151면

	원유	가스	
		수반가스	비수반가스
탐사 및 생산	탄화수소법 적용	탄화수소법 적용	탄화수소가스법 적용
초기 저장	상동	탄화수소가스법 적용	
수송	상동	상동	
분배 또는 판매	상동	상동	
정제	상동	상동	

탄화수소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실한 선행연구²⁵⁾가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탄화수소가스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탄화수소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간략하게만 살펴본다.

2. 국유화 원칙 및 소관부서

탄화수소법 제3조는, 영토,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모든 탄화수소는 국가의 소유이며,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산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탄화수소가 국가의 소유인 이상 그 관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탄화수소법 제8조는 원유, 가스 등 탄화수소와 관련한 정책이나 계획의 입안·실행·감독, 탄화수소의 개발·보존·통제, 탄화수소에 대한 시장조사·분석·가격결정 등은 석유광물부(*Ministerio del Poder Popular de Petróleo y Minería*, Ministry of Petroleum and Mines)²⁶⁾의 소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광물부는 국가의 자원개발계획에 따라 이들 업무를 수행한다(탄화수소법 제8조).

3. 초기활동의 주체 및 사업수행방식

탄화수소법 제9조는 원유의 탐사, 추출, 생산, 수송 및 초기저장을 “초기활동(Primary activities)”

25) 정경원의 3인의 논문은 탄화수소법의 국문 번역을 포함하여 탄화수소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6) 과거에는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에너지석유부(Ministry of Energy and Petroleum) 등으로 호칭되었다.

라고 명명하면서, 신헌법 제302조가 정한 비에 따라 초기활동 및 초기활동 관련 사업은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다(reserved to the State)고 규정하고 있다.

“초기활동”은 흔히 상류부문(upstream)이라 통칭되는 사업영역에 해당하므로 탄화수소법 제9조의 취지는 원유의 상류부문과 관련한 사업은 국가 주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활동의 구체적인 사업수행방식에 대해서는 탄화수소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초기활동은 국가가 직접 혹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기업²⁷⁾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joint venture)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초기활동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민관합작기업을 혼합회사(*empresas mixtas*, mixed company)라 하는데 국회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혼합회사의 설립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합작조건을 부기할 수 있다(탄화수소법 제33조).

한편 2008. 3. 30. 베네수엘라 국회는 에너지광물부(현 석유광물부)가 제출한 혼합회사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는데, 이 규정은 사실상 혼합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탄화수소법의 시행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²⁸⁾.

- 외국기업과 혼합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PDVSA의 지분을 60% 이상으로 한다.
- 혼합회사가 생산한 원유 전량은 PDVSA에 판매되어야 한다.
-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금지하고 국내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혼합회사의 운영기한은 최대 25년이며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탄화수소법 제34조 제1항). 이 연장은 최초 운영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운영기간 만료 5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되어야 한다(탄화수소법 제34조 제1항). 사업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일체의 구축물이나 장비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운영기한 만료와 동시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헌납되어야 한다(탄화수소법 제34조 제3항 a.). 혼합회사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이 먼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중재에 의한 해결 포함)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관할 법원이 분쟁을 해결한다(탄화수소법 제34조 제3항 b.).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국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상류부문에 속하는 원유(수반가스 포함)개발

27) PDVSA가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28) 정경원 외 3인, 제60-61면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상류부문은 국가에 유보된 사업영역이므로 외국기업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으며 국가 혹은 국가가 100% 지분을 가진 국영기업과 합작하여 설립한 혼합회사를 통해서만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의 지분율은 60% 이상이어야 하므로 민간기업은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여기에 생산물은 모두 PDVSA에 판매하여야 하고 혼합회사 설립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국회가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많은 제약을 감수한 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4. 상업화 및 정제사업

탄화수소를 증류, 정화, 변형시키는 사업은 “상업화 및 정제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상업화 및 정제사업은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분야이다(탄화수소법 제10조).

정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광물부로부터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하는데(탄화수소법 제12조), 석유광물부의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자는 그 License를 양도하거나 그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탄화수소법 제16조). License의 최대 기한은 25년이며 필요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1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탄화수소법 제13조). 정제사업자가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석유광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탄화수소법 제11조).

5. 로열티

국가는 생산된 탄화수소 양의 30%를 로열티로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한계유전이나 오리코노 오일 벨트에 있는 초중질유 유전의 경우 위 30%의 로열티를 적용하였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20%로 인하할 수 있다(탄화수소법 제44조). 정부는 로열티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탄화수소법 제45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탄화수소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한다(탄화수소법 제47조).

6. 세금

로열티 외에도 생산된 원유에 대해서는 토지면적세, 유류소비세, 일반소비세, 석유추출세, 수출등록세 등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이 부과된다²⁹⁾.

V. 가스개발 관련 법제

1. 관련 법률 및 그 적용범위

앞서 설명한 바대로 베네수엘라의 가스 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법은 탄화수소가스법(1999년 제정, 2006년 개정)과 그 시행령(2000년 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Decreto Gaceta Oficial N.º 5,471 Extraordinario De Fecha 05 De Junio De 2000*)이다. 탄화수소가스법은 제2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상세하게 다시 기술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비수반 가스에 대한 탐사(exploration), 채취(exploitation)
- ② 비수반가스인지 수반가스인지 불문하고 가스의 수집(collection), 저장(storage), 사용(use) 등에 관한 사항
- ③ 비수반가스인지 수반가스인지를 불문하고 가스의 정제(processing), 생산(manufacturing), 운송(transportation), 배분(distribution), 국내외 거래(domestic and foreign trade)
- ④ 가스(gaseous hydrocarbons)에 포함된 원유(liquid hydrocarbons)와 비탄화수소 화합물(non-hydrocarbon components)
- ⑤ 원유(oil)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위 내용을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탄화수소가스법은 (i) 탐사 및 채취 단계에 대해서는 비수반가스만 규율하고 (ii) 수입, 저장, 사용과 같이 가스 채취 이후의 모든 중류부문(midstream)

2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경원 외 3인, 제66면의 표 2-13 참조

및 하류부문(downstream)과 (iii)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비수반가스와 수반가스 모두를 규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탄화수소가스법의 규율대상에 속하는 사업은 정부가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민간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민간사업자는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불문하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개별사업별로 석유 광물부로부터 License나 Permit을 획득하여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22조).

2. 자원의 국유화 원칙

탄화수소가스법 제1조는 베네수엘라 영토, 영해, 인접수역(contiguous maritime zone), 대륙붕에 소재하는 가스는 모두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소유로서 공공의 자산이며 양도불가능한 절대적인 자산임을 선언하고 있다. 신헌법 제12조가 선언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며 탄화수소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3. 소관부서

행정부는 탄화수소가스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광물부를 통해서 가스산업에 관한 계획 수립, 조사,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6조). 이는 가스에 대한 규제권한이 주정부 혹은 그 하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귀속됨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4. 공공성

탄화수소가스법 제3조는 국가발전, 가정용·산업용 연료나 원재료, 수출 등을 목적으로 가스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환경보호까지 고려하여 가스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대량소비를 위한 가스

의 운송이나 배분은 공적 서비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5. 광구의 통합

가스가 저장된 저류층(reservoir)이 복수의 운영자가 작업하고 있는 지역들에 걸쳐 있다면, 운영자들은 석유광물부의 승인을 얻어서 그들의 생산작업을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그들의 생산작업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20조).

또한 저류층이 생산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걸쳐 존재한다면, 정부는 석유광물부를 통해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20조).

6. 비수반가스전의 개발(상류부문)

가. 사업주체

비수반가스의 개발은 석유광물부 및 국영가스공사(*Ente Nacional de Gas*, “ENAGAS”)에 의해 감독된다. 모든 비수반가스는 국가의 소유지만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License를 획득함으로써 그 탐사 및 개발권은 사업자에게 이전된다(탄화수소가스법 제25조).

즉 License만 발급받으면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는 불문하고, 정부가 지분참여를 하지 않은 순수 민간사업자라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사업자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정책적인 견지에서 판단될 문제인데, 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급된 6개의 License가 모두 100% 민간기업에 발급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스개발사업이 민간에 개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정책적 견지에서 License 발급시 상업화 선언 후 정부가 최소 30%의 수익지분을 가지도록 하는 License가 발급되고 있다. 예컨대 Cardón IV³⁰⁾의 가스 License의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는 PDVSA로 하여금 35%의 수익지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

30) 베네수엘라 만(Gulf of Venezuela)의 Cardón IV 해상광구를 말한다. Cardón IV 해상 광구에서는 Repsol, S.A.와 ENI S.p.A.가 50:50(출자지분 기준)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인 Cardón IV, S.A.가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스 License하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라도 도중에 원유, 컨덴세이트 혹은 수반가스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개발은 탄화수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탄화수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그 개발사업에서 6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³²⁾.

나. License 기간

License는 석유광물부가 발급하는데 최장 기한은 35년이며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최대 30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이 연장은 최초 라이선스기간 중 절반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료 5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24조).

License는 탐사활동을 위해서는 최대 5년의 기간을 부여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24조). 그 기간 동안 비수반가스가 발견되면, 사업자는 well test 후 30일 이내에 석유광물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계획을 제출하여 석유광물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평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 후 상업적 발견을 선언하면 사업자는 개발계획을 석유광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기간은 최장 35년이고 최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License는 개발기간을 25년 이내로 하고 있다³³⁾.

다. License 발급절차

License는 입찰을 거쳐 발급되지만,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License가 발급될 수도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시행령 제21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도 License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상업화 선언 이후 정부가 수익지분(step-in right)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와 정부소유기업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License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정부소유기업과 사이에 Joint Venture Agreement를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³⁴⁾.

31)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중 3.4번 참조

32) 상동

33)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중 3.3번 참조

34) 상동

라. License 내용

License 발급시 석유광물부는 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24조). 일부 License의 경우 3~5년의 탐사기간 동안 탄성과 탐사, 탐사시추 등의 무탐사 작업량을 규정한 예가 있으며, 이미 가스가 발견된 가스전에서는 License 발급시 개발기간 이후 의무생산량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³⁵⁾. 또 베네수엘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³⁶⁾. 그 외에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모회사 또는 신용도 있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나 stand-by L/C를 요구하기도 한다.

마. 폐공(abandonment)

석유광물부는 사업자에게 License 만료시 어떤 well을 폐공하고 어떤 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 통보할 수 있다. 폐공은 사업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석유광물부는 License 발급시 사안별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조건으로 부가함으로써 이 원칙을 확대해 왔다³⁷⁾.

- (i) 사업자가 매년 가스생산량, 확인매장량, 추정 폐공 비용을 고려하여 소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미화 표시 금액을 신탁계정에 예치(2001년 육상 가스전 License의 경우)
- (ii) 미화 1200만 달러(License가 발급된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됨)에 상당하는 볼리바르(Bolivar)³⁸⁾에 이르기까지 매년 75만 달러에 상당하는 볼리바르를 신탁계정에 예치. License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예치금이 폐공을 위한 비용충당에 부족하면 사업자는 추가로 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남은 경우에는 사회프로그램에 사용됨.
- (iii) 2003년 1월자 FASM³⁹⁾ 143 declaration을 따를 것(Plataforma Deltana⁴⁰⁾ License의 경우)

35)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중 3.3번 참조

36) <http://us.practicallaw.com/1-529-6958?source=relatedcontent> 중 7번 참조

37) <http://us.practicallaw.com/1-529-6958?source=relatedcontent> 중 19번 참조

38) 베네수엘라의 법정 화폐이다.

39)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40) 베네수엘라의 Orinico delta에 있는 유전 및 가스전이다.

바. 분쟁해결

License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이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해결(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포함)되지 못한 경우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24조).

샤. License의 양도와 취소

탐사 및 생산 License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다. 법률의 취지상 high level에서의 양도나 담보설정, 예컨대 License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그 주식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석유광물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License가 취소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25조).

- ① 탐사작업량에 관한 규정 위반,
- ② 법에 따라 License에 부가된 조건 위반
- ③ 석유광물부의 승인 없는 License 양도
- ④ 라이선스에 명기된 취소사유, 특히 사업운영 및 작업과 관련한 취소사유의 발생
- ⑤ 베네수엘라 및 그 인접국에 걸쳐있는 저류층에서 탐사 및 생산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계약이 관련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지 못한 경우

7. 가스의 저장, 운송, 배분(중류부문과 하류부문)

탄화수소가스법은 가스의 저장(storage)⁴¹⁾, 운송(transportation), 배분(distribution) 사업 등 하류부문으로 볼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들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41) 저장과 관련해서는 탄화수소가스법 외에도 2010년에 제정된 storage and distribution rules during the management of liquefied petroleum gas라는 법률이 적용된다.

가. 사업주체

행정부는 가스의 운송이나 분배를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정부가 출자한 기업일 필요는 없고 순수 민간자본만이 참여한 기업이어도 무방하며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특별한 제한도 없다(탄화수소가스법 제11조).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에서 가스 운송, 분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 Permit

수반가스이든 비수반가스이든, 다른 사람이 생산한 가스를 이용해서 저장, 운송, 배분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석유광물부로부터 Permit을 얻어야 한다. Permit의 경우 License에 대한 탄화수소가스법 규정들이 대부분 준용된다. 다만 Permit와 License의 차이점은, License의 경우 License 만료 이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자가 설치한 일체의 구축물과 자산을 아무런 담보권 없이 국가에 헌납하여야 하는 반면, 저장, 운송, 배분사업에서 발급되는 Permit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탄화수소가스법 제27조).

Permit은 석유광물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는데, 만일 석유광물부의 사전승인없이 이를 양도하였다면 Permit의 취소사유를 구성하며, 그 외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Permit이나 탄화수소가스법에 규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석유광물부는 Permit을 취소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28조).

수반가스인지, 비수반가스인지 불문하고 가스생산자는 위와 같은 Permit을 얻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만일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가스를 저장, 운송, 배분 등의 사업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사업을 위한 인허가 외에도 위와 같은 Permit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29조).

다. 사업자의 의무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저장, 운송, 배분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8조).

그리고 석유광물부의 승인이 없는 한, 한 지역(region)에서 동일 사업자가 가스의 생산, 운송, 배분

사업 중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고, 석유광물부가 허가한 경우에도 동시 수행되는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9조). 이는 중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수직적 통합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스 및 그 파생물의 저장, 운송, 배분 사업자는 자신의 시설을 저장, 운송, 배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조건은 두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석유광물부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10조).

라. 가격결정

석유광물부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중심지와 정제(processing)중심지로부터 공급되는 가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석유광물부와 산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공동으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가스가격과 탄화수소가스법에 규정된 가스 관련 각종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며(탄화수소가스법 제12조), 국영가스공사는 그러한 가격결정을 위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⁴²⁾. 소규모 소비자에 대한 가스 판매가격은 “가스 취득가격 + 운송가격 + 배분 요율”이라는 산식으로 결정된다(탄화수소가스법 제12조).

가스 저장, 운송, 배분 사업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정한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13조).

첫째, 저장, 운송, 배분 사업자가 서비스의 적절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감가상각, 할부상환액 등을 문제없이 조달할 수 있고, 위험도가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유사한 수준의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요율이어야 한다.

둘째, 인도방식, 지리적 위치, 생산지나 플랜트에서의 거리,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다른 요소 등에서 기인하는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따르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율로 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42) <http://us.practicallaw.com/1-529-6958?source=relatedcontent> 중 21번 참조

8. 수용, 일시사용 및 지역권

가스를 탐사, 채취, 운송, 분배, 저장, 가공(process)하는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해 수용, 일시 점유, 지역권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데(탄화수소가스법 제16조) 탄화수소법에도 동일한 규정들이 있다.

탄화수소가스법은 특히 지역권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먼저 그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지역권의 취득을 시도할 수 있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출석하여 작업 개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과 그 작업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17조).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에 소유자에게 3일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해야 한다. 소유자가 소환장에 따라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공고일로부터 3일 후에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할 수 있다. 출석일에 법원은 세명의 전문가로부터 예상가능한 손해와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소유자, 법원이 각 1인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만일 소유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전문가 임명을 거부하면 법원이 대신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손해와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으면, 사업자는 예상배상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법원은 신청된 내용대로 지역권이 설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는 정식재판으로 회부된다(탄화수소가스법 제17조).

수용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제19조),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탄화수소가스법에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9. 로열티와 세금

채취된 후 재주입되지 않은 가스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20%의 로열티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34조). 정부는 석유광물부를 통해서 로열티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징수할 권리를 가지는데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석유광물부가 로열티를 현물로 수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를 위해 운송,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수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생산지의 시장가격으

로 로열티 가스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34조). 단 수출되는 가스의 경우 FOB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가 산정된다.

또한 가스사업자는 연료로 소비되는 가스와 관련하여 연료세를 납부하여야 하며(탄화수소가스법 제35조), 최대 34%에 이르는 통상의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⁴³⁾. 그 외에도 가스사업자는 원유개발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스포츠 기부금, 과학기술세, 마약방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License 발급시 사안별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도 부담하여야 한다⁴⁴⁾.

종합적으로 보면 탄화수소법이 적용되는 원유의 경우 로열티율이 30%이고 법인세율은 50%에 이르므로 로열티와 세금 면에서는 가스개발사업이 원유개발사업보다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10. 국영가스기업

가스 수송과 분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영가스기업을 설립한다. 국영가스기업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탄화수소가스법 제38조).

- ① 가스의 효율적인 운송·저장·분배·판매 촉진과 그에 대한 감독
- ② 1차 가스 시장 및 운송·저장·분배·판매 사업자간 비경쟁적, 독점적, 차별적 행위의 감독과 신고, 이들 각 사업의 경제적 균형 도모
- ③ 석유광물부의 승인 사항인 가스 공급지 결정 및 변경을 석유광물부에 제안
- ④ 경쟁촉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송인, 소매인, 판매인, 주요 소비자간 2차 거래시장의 개발 지원
- ⑤ 석유광물부의 승인 사항인 가스 운송·저장·분배·판매 사업자의 자격 인정을 위한 조건을 석유광물부에 제안
- ⑥ 경쟁촉진, 운송과 배분사업에서의 공정한 가격책정, 소비자에 대한 최저가 가스 공급, 양질의 운송·저장·분배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석유광물부 및 산업부에 제안
- ⑦ 운송, 저장, 분배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 ⑧ 연료 및 원재료로 이용되는 가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최선의 거래관행 형성 촉진

43)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중 3.5번 참조

44) 상동

- ⑨ 가스산업 분야 권리와 의무 보장
- ⑩ 가스산업과 관련한 준법지원
- ⑪ 가스 산업 분야의 규정, 적정 가격·관세 산정, 수요량의 적기 공급 등에 관한 다양한 자문 제공
- ⑫ 기타 탄화수소가스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1. 정부소유기업

정부는 탄화수소가스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단독 주주로 참여한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정부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형식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43조). 이러한 정부소유기업이 자회사 혹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그 자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합병, 해산, 청산하거나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소유기업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44조).

정부소유기업의 정관은 주주들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주주들은 정부소유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승인권한을 가진다(탄화수소가스법 제45조).

석유광물부는 정부소유기업 및 그 자회사를 감시,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 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제공한다(탄화수소가스법 제47조). 행정부는 탄화수소가스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정부소유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탄화수소가스법 제48조).

VI. 분쟁해결방안

1. 베네수엘라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석유광물부, PDVSA·국영가스공사 등 국영자원기업은 License/Permit 발급권한, 사업자 감독권한, 가격결정 권한 등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산업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베네수엘라 정부 혹은 국영자원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정부 혹은 국영자원기업을 상대로 먼저 베네수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탄화수소가스법 제4조 또한 당사자들간에 License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이 중재 등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법원의 독립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부 혹은 국영자원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⁴⁵⁾. 따라서 그 대안으로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금융관련계약이 아닌 한 PDVSA가 다른 나라 법원, 예컨대 뉴욕이나 영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예는 없지만, 합작계약 체결시 베네수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조항을 수용한 예들은 있다고 한다⁴⁶⁾.

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영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재는 크게 중재합의에 의한 상사중재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한 조약에 의한 국제중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사중재에 관해 보면, 베네수엘라는 일부 유보 조항⁴⁷⁾을 두기는 하였지만 뉴욕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가입국이므로 외국중재판정을 베네수엘라에서 승인 및 집행하기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중재결정을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중재판정문상 의무를 이행한 예도 있으므로⁴⁸⁾ 상사중재도

45)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08816/ten-things-to-know-investing-in-the-venezuelan-oil-and-gas-industry>

46) <http://latinlawyer.com/reference/article/40334/oil-gas> 중 30번 참조.

47) 베네수엘라는 (i) 뉴욕협약을 다른 계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ii) 베네수엘라법 하에서 상사관계로 인정되는 법률분쟁에 대해서만 현 뉴욕협약을 적용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유보하고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Declarations:

(a) The Republic of Venezuela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b) The Republic of Venezuela will apply the present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its national law.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의 내용을 원용하였음)

48)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중 13.3번 참조

분쟁해결수단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당사중재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존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인데 상대방이 중재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당사분쟁이 아니어서 뉴욕협약 가입시 베네수엘라가 유보한 조항에 따라 뉴욕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뉴욕협약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조약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한 국제중재를 분쟁해결방안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2012. 1. 26. 흔히 “ICSID 협약”,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에 발생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서는 탈퇴하였고 2012. 7. 25.부터 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자간 조약인 ICSID 협약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을 이용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는 없다⁴⁹⁾.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규정된 분쟁해결수단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아직 우리나라와 사이에는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2013년 4월 21일 기준으로 28개국⁵⁰⁾⁵¹⁾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⁵²⁾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베네수엘라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투자⁵³⁾함으로써 투자협정상 분쟁해결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9) ICSID 협약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중재로서 네덜란드 회사인 ConocoPhillips Gulf of Paria B.B.(Dutch), ConocoPhillips Hamaca B.V.(Dutch), ConocoPhillips Petrozuata B.V.(Dutch) 등 3개 회사가 제기한 에너지 관련 중재사건(ICSID Case No. ARB/07/30)이 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https://icsid.worldbank.org/apps/ICSIDWEB/cases/Pages/casedetail.aspx?CaseNo=ARB/07/30> 참조

50) 베네수엘라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아래와 같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경제연합,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덴마크, 에쿠아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란,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루과이, 베트남)>>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228#iialnnerMenu> 참조

51) 위 28개국 외에도 브라질과 이탈리아와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이 있으나 이들 두 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2008. 11. 1. 위 28개국 중 네덜란드와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을 해지하였으나 그 해지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최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기존에 이루어진 투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간 투자협정을 15년간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Venezuela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Yearbook, Volume 1, Practical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제 59-60면 참조

52) Venezuela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Yearbook, Volume 1, Practical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제59-60면. 다만 베네수엘라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리스트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로 보인다.

53)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08816/ten-things-to-know-investing-in-the-venezuelan-oil-and-gas-industry>

VII. 가스개발사업의 전략 및 구도와 관련하여

1. 외국기업의 가스개발사업 참여 현황 및 사례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중 82%는 수반가스로 추산된다⁵⁴⁾. 이 말은 대부분의 가스가 탄화수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그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은 2009년 Socialist Gas Revolution을 주창하면서 천연가스의 생산량 증대와 수출 개시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해상(offshore) 가스전을 중심으로 비수반가스의 집중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PDVSA가 가장 많은 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Plataforma Deltana, Blanquilla-Tortuga, Marsical Sucre 등의 해상가스전을 중심으로 Total, Chevron, Statoil 등의 민간사업자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성공한 가스전으로 꼽히는 것은 베네수엘라 만에 있는 Cardón IV block의 Perla 해상 가스전인데 스페인의 Repsol-YPF사 및 이탈리아의 Eni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17Tcf의 가스를 발견하여 2015년 생산을 개시하였다⁵⁵⁾.

Repsol-YPF와 Eni는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Cardon IV S.A.라는 Joint Venture를 설립해서 License를 취득하였는데, 생산물에 대해서는 PDVSA가 step-in right을 가지는 결과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해서는 PDVSA가 35%, Repsol-YPF 및 Eni가 각각 32.5%의 수익지분을 가지는 구조⁵⁶⁾로 사업이 수행된다.

54)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중 1번 참조

55) Venezuel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Volume 1, Strategic Information and Basic Laws 제54-55면;<http://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Eni-Repsol-Begin-Production-At-Huge-Gas-Field-Off-Venezuela.html> 등 참조

56) http://www.repsol.com/es_en/corporacion/prensa/notas-de-prensa/ultimas-notas/23122011-desarrollo-megacampo-perla-venezuela.aspx

2. 구체적인 가스개발사업 전략 및 구도에 대한 소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가스개발사업의 전략과 구도에 대한 소견을 밝히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베네수엘라 자원개발사업은 원유보다는 가스, 수반가스보다는 비수반가스, 육상가스전 보다는 해상가스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원유 또는 수반가스 개발사업은 탄화수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혼합회사를 통해서만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PDVSA가 혼합회사의 지분 60%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생산물은 PDVSA에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부의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가스 생산량 증대 및 가스 수출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기조면에서도 가스개발사업이 더 유리하고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해상 비수반가스전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둘째, Cardón IV block의 Perla 해상 가스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구도면에서 컨소시엄 혹은 사업자들이 설립한 현지 자회사가 석유광물부와 사이에 License 발급을 위한 광권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와 별도로 PDVSA와 사이에 PDVSA의 step-in right을 규정하기 위한 Joint Venture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권계약에는 의무작업량, 의무투자비, 폐공시 조치사항, 특별부담금, 로열티 등 License 발급시 조건으로 부가될 여러 내용이 포함될 것인바,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License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탄화수소가스법 제25조) 사업자들이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가혹한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Joint Venture 계약에서는 PDVSA의 권리를 가급적 step-in right 정도로 제한하고 사업수행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에서는 배제하여야 하며 너무 많은 권리를 불필요하게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PDVSA는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지분만 취득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광권계약과 Joint Venture계약에는 중재조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탄화수소가스법 및 탄화수소법은 License와 관련한 분쟁, 혼합회사 운영과 관련한 분쟁 등에 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인 점을 심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을 베네수엘라 법원으로 분쟁을 끌고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중재합의조항의 삽입을 꼭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중재조항 삽입이 곤란한 경우 차선책으로 베네수엘라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국에 자회사 형태로 먼저 진출한 후 그 자회사로 하여금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외교적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와의 투자협

정 체결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적기에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력한 자원국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특히나 사업내용에 상응하는 인허가 획득은 필수적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스 생산을 위한 License 외에도 생산된 가스의 저장, 운송,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Permit을 받아야 하고 수출을 위해서도 인허가가 필요하며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 외에 운송이나 분배 등 수직계열의 사업을 겸영할 때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인허가 발급시 석유광물부가 다양한 내용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조건의 부가는 피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인허가를 획득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자의 수익모델을 사전에 정확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원유사업에 비해 비교적 많이 민간에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자원국유화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보니 가스 및 가스 관련 용역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며, 상업화 선언 후 PDVSA에 수익지분을 제공하여야 하고(탄화수소 가스법 시행령 제23조), 가스개발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가급적 베네수엘라 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탄화수소가스법 시행령 제3조), 부득이하게 베네수엘라 현지의 pipeline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 등 수익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예컨대 생산된 가스의 수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생산사업만을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가스 운송이나 현지 판매, 정제 등 수직계열의 사업을 겸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가스 사업만을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플랜트 사업을 함께 수주하여 package deal로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등 수익모델의 고안과 구축에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VIII. 맺으며

현재의 저유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적 불안이 언제쯤 해소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자원량을 고려할 때 베네수엘라 자원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자유로운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을 폐지 내지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현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본입장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원자재 시장이 둔화되면서 베네수엘라에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2015. 11월말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크게 하락하였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15. 12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총선에서 좌파와 우파 중 어느 쪽이 승리할지, 총선 결과 베네수엘라의 자원국유화 정책이 완화되어 외국인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서적 및 논문

정경원 외 3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 에너지·자원개발제도, 2015. 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John S. Lowe, Oil and Gas Law, West, Fifth edition

Latin America Oil & Gas Handbook, 2012, Baker & McKenzie

Venezuel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Volume 1, Strategic Information and Basic Laws, 2015, IBP Inc.

Venezuela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Yearbook, Volume 1, Practical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2015,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Barry Barton, Energy Security: Managing Risk in a Dynamic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Uisdean R. Vass 외 1인, The New Venezuelan Legal Regime for Natural Gas: A Hopeful New Beginning?, 2001,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 관련 법령 및 조약

베네수엘라 헌법 : Constitución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탄화수소가스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베네수엘라 탄화수소가스법 부령 : 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Decreto Gaceta Oficial N^o 5.471 Extraordinario De Fecha 05 De Junio De 2000

뉴욕협약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인터넷 자료

<http://latinlawyer.com/reference/article/40334/oil-gas>

<http://us.practicallaw.com/1-529-6958?source=relatedcontent>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08816/ten-things-to-know-investing-in-the-venezuelan-oil-and-gas-industry>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015/venezuela>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

<http://venezuela.justia.com/federales>